

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공고

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2일

미래창조과학부

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

1. 발급번호 : 제2013-001호
2. 발급일자 : 2013년 11월 22일
3. 기 관 명 : (재)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
4. 대 표 자 : 서 강 수
5. 주 소 : 서울시 종로구 종로51 종로타워 19층(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)